

국제대회 선수파견 및 대표팀 초상권 규정

(경기위원회 2015.1.17.제정 / 2016.8.19. 수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협회가 관장하는 국제대회 선수단 구성·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대표단은 법령 및 상위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한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 (국제대회 파견 선수단의 구분)

국가대표선수단 및 대표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대표 선수 및 임원을 말한다.

① 국가대표 선수단

1. ICU 세계선수권 대회 및 Asia 챔피언십
2. ICU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IOC가 인정하는 국제스포츠기구에서 개최하는 대회

② 한국대표선수단

1. Asia Open, National Open, Asia Youth Open 등 동급대회
2. 기타 협회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제4조 (국가대표선수단의 운영) 본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종목별 팀은 대한민국 및 본 협회의 국가대표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① ICU 세계선수권 대회 및 Asia 챔피언십 등 이와 같은 동급의 대회와 같이 선발전을 통하여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을 말한다.

② 대표팀 감독 선발규정은 경기력향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공개모집하여 선발하도록 하며,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5인의 소위원회(경기력향상위원장, 경기위원장, 교육위원장, 심판위원장, 회장)에서 정한다.

③ 감독은 공개선발전으로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사전 승인된 기준에 의해 우수한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여야 한다. 국가대표 선발 기준 및 훈련 계획을 경기력 향상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발전을 개최할 수 없다.

단, 협회의 재정이 부족으로 인해 참가자 개인부담금이 있는 경우나, 루틴 구성 등의 이유로 포지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력향상위원회에 요청하여, 추가 선발전을 거쳐 선수단을 선발한다.

- ④ 부상, 훈련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선발전 참여인원이 적거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후보 선수나 선발전에 참여하지 않은 선수 중에서, 감독의 추천재량으로 경기력 향상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선발 인원은 팀 전체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Asia 챔피언십의 경우에는 재정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협회에서 선발 전 없이 신청팀을 파견할 수 있으며, 이때 모든 비용은 개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참가 신청팀이 많은 경우는 각 종목당 국내 상위 입상팀을 우선 파견한다.
- ⑥ 본 대회에 참가한 모든 종목별 명칭은 TEAM KOREA로 호칭한다. 이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팀의 유니폼 및 대회에 필요한 기타 모든 물품에 국가대표 및 대한체육회 로고의 사용을 의무화한다. 모든 유니폼에 국기와 TEAM KOREA 및 대한민국 대표성을 띤 약자 및 로고의 부착하여야 한다.
- ⑦ 국가대표선수단은 선수단장과 감독, 코치, 선수 및 참관단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선수단 파견 비용은 국가의 지원금 일부와 참가자가 부담금 또는, 스폰서의 후원금으로 한다.
- ⑧ 선수단 및 모든 선수는 스폰서의 권리보호를 위해 대회 파견일정 동안에 협회에서 제공하는 유니폼과 훈련복, 신발 등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 용품이나 별도 스폰서의 제공 의상 및 용품을 착용해서는 안된다.

제5조 (한국대표선수단의 운영)

- ① **Asia Open, National Open, Asia Youth Open 등 이와 같은 급의 대회와** 같이 선발전을 하지 않고 출전하는 대회의 선수단을 말한다.
- ② 선발규정은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전년도·당해년도 전국대회 1위 ~ 3위 입상팀에 우선 출전권을 부여한다.
다만, 상위 입상팀 중 출전을 포기할 경우 협회 추천으로 파견할 수 있다.
- ③ 대표단 파견시는 참가팀의 선수단장과 감독, 코치, 선수 외에 반드시 협회가 지정한 감독관 1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감독관 파견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참가자가 나눠 부담하거나, 참가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④ 감독관은 대표선수단이 경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주최 또는 주관단체와의 중재하여 선수단의 경기 출전 순위를 조정하거나, 파견 참가 클럽간의 상호

협력을 유도하여, 국위선양 할 수 있도록 파견 선수단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⑤ 단장 선출은 참가팀의 지도교사 또는 코치, 감독들의 협의를 통해 추천된 사람중에서 경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⑥ 본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팀은 한국 대표 자격을 가지고 참가하게 되며, 그 명칭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정한다.

1. 본 대회에 참가하는 팀의 참가신청서 및 참가팀 명칭은 대회 취지에 맞게 소속팀의 명칭을 사용한다. 국가대표, 팀코리아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예) 소속: OOOOO(KOREA), 팀명 : OOOOO)

2. 본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팀은 유니폼에 참가 팀 명칭, 국기 및 협회 로고를 의무화 한다. 로고의 부착 위치는 팀 명칭은 유니폼 또는 단체 티셔츠의 앞 가운데 에 표기하며, 국기는 왼쪽 팔 어깨아래, 협회로고는 오른쪽 팔 어깨 아래에 부착하거나, 인쇄하여야 하고, 대회 출국 전 3일전까지 반드시 경기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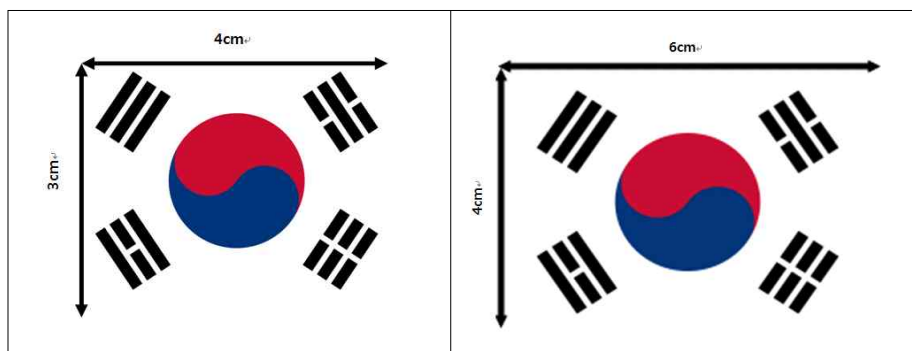
3.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팀은 경기루틴에 대해, 협회 사무국을 통해 최소 2주 전까지 대회 루틴에 대해 규정 검수를 위해 영상을 제출하여 사전에 경기력 향상을 위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4. 루틴 검수는 심판위원회와 경기위원회에서 지정한 전문위원2~5인 이내로 검수한다. 단, 검수에 따른 비용은 최고 20만원이며, 출전팀이 부담한다.

5. 모든 파견 선수는 개인 실손 보험과 여행자보험을 기타 선수단 전원은 반드시 여행자 보험 및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예상치 못한 부상, 사고 및 질병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가입증명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선수단장은 출전 대회명, 일정, 파견명단, 출전종목, 결과 등이 기록된 간단한 결과보고서를 파견 후 1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7. 부착하는 태극기, 협회 로고 크기는 모든 팀이 동일한 사이즈를 부착한다.



제6조 국가대표팀 초상권리 (ICU 세계선수권 대회, Asia 챔피언십 및 동급 대회)

1. 국가대표선수 개인의 초상권 및 대표단원들의 집합적 초상권은 원칙적으로 협회가 보유한다.
 2. 국가대표단은 협회의 요구에 의한 홍보 및 교육활동 또는, 경기 종료 후 각종 촬영 및 인터뷰에 응하여야 한다.
 3. 대표선수 개인이 대표팀 초상을 이용하여 각종 이벤트, 방송 및 광고 출연 등을 할 때 예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국가대표 선수단의 감독, 코치 등을 포함한 임원진과 모든 선수는 대표단의 공식훈련과 경기 중 또는 본 협회의 요청에 따라 대표선수의 자격으로 공식 행사 등에 참가할 경우 협회로부터 지급받은 용품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5.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에서 지급되는 용품과 다른 용품을 착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선수는 사전에 사유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의 지시 및 조치에 따라야 한다. 이를 심각하게 위반함으로써 인해 스폰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6. 국가대표의 용품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개인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7. “팀코리아” “치어리딩 국가대표선수” 등의 명칭에 대한 사용 권한은 ICU세계치어리딩연맹과 대한체육회의 보호 아래 KCA 대한치어리딩협회에 있으며,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권 및 권한 침해로 인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 초상권: 자기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 인격권의 하나로,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거나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